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개정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7. 자격부여	<p>가. 신규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 인증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6. 가항의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1주전까지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신청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p> <p>나.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p>	<p>가. 신규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 인증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6. 가항의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1주전까지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및 해당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u>입찰신청 마감일까지</u> 인정한다.</p> <p>나. 단, 만60세를 넘었거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또는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u>입찰신청 마감일까지</u> 인정한다.</p> <p>다. 심사결과 적격업체로...</p>	<p>기준모호 명확화</p> <p>기능자격 정년연장 (60세→63세)에 따라 60세초과 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유자격전공 확인기준 신설 (순번변경)</p>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8. 자격관리	<p>나. 도급업체는 계약기간중에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인원의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준인원을 보충한 후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u>(신설)</u></p> <p>위와 같은 신고절차는 유자격 전공인원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우리회사가 적발한 경우 해당업체의 무정전 시공인증 업체 자격을 정지한다.</p>	<p>나. 도급업체는 계약기간중에 기 신고된 유자격 전공인원의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준인원을 보충한 후 해당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u>단, 해당전공이 7.나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 대신 “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u> 위와 같은 신고절차는 유자격 전공인원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우리회사가 적발한 경우 해당업체의 무정전 시공인증 업체 자격을 정지한다.</p>	고령자 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자의 자격관리기준 신설
9. 참가조건	<p>나. 가항의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u>(신설)</u></p>	<p>나. 가항의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 <u>(포함)</u>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u>단, 시공업체의 유자격전공이 7.나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인정한다.</u></p>	고령자 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자의 자격관리기준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9. 참가조건	<p>다.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p>	<p>다.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또는 <a href="#">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a> 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한다.</p>	<p>고령자 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자의 자격관리기준 신설</p>
10. 낙찰예정업체	<p>가. 1) 2) 업체소속 유자격 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p> <p>다. 낙찰예정업체는 9항에 따라 확보한 유자격 전공인원 중 우리회사에 신고되지 않은 유자격 전공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 시행일(또는 서류심사일) 이전까지 해당 미신고 인원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유자격 전공의 확보시점은 9항에 의한다.</p>	<p>가. 1) 2) 업체소속 유자격 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또는 <a href="#">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a></p> <p>다. 낙찰예정업체는 9항에 따라 확보한 유자격 전공인원 중 우리회사에 신고되지 않은 유자격 전공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 시행일(또는 서류심사일) 이전까지 해당 미신고 인원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 또는 <a href="#">건강보험 자격득상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a>과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유자격 전공의 확보시점은 9항에 의한다.</p>	<p>고령자 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자의 자격관리기준 신설</p> <p>고령자 또는 국민연금조기수령자의 자격관리기준 신설</p>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p>10. 낙찰예정업체</p>	<p>자. 무정전공사 이외의 공사는 라항, 마항, 바항을 참조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사시공부서에서 인원 및 장비(공구)에 대한 서류심사를, 착공 후 감리원이 현장실사를 시행하되, 유자격 전공은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 사선공사 :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의 자격소지자 4명 이상</p> <p>2) <u>지중공사</u> : 지중배전전공 자격소지자 2명 이상</p> <p>3) ABC 케이블 공사</p> <p>4) 신기술 대상공사</p>	<p>자. 무정전공사 이외의 공사는 라항, 마항, 바항을 참조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사시공부서에서 인원 및 장비(공구)에 대한 서류심사를, 착공 후 감리원이 현장실사를 시행하되, 유자격 전공은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 사선공사 :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의 자격소지자 4명 이상'</p> <p>2) <u>지중공사</u> : <u>지중배전전공 자격소지자 3명 이상</u></p> <p>3) ABC 케이블 공사 :</p> <p>4) 신기술 대상공사 :</p>	<p>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 변경사항 반영</p>
<p>20. 자격정지</p>	<p>마. 배전 무정전(또는 활선)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5년) 만료이전에 무정전 전공교육 또는 무정전 기능향상교육을 수료하고 자격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시부터 합격 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단, 2010.1.1 이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에 한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초과시까지 합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격이 상실된다.</p>	<p>마. 배전 무정전(또는 활선)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무정전 전공교육 또는 무정전 기능향상교육을 수료하고 자격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시부터 합격 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u>해당전공의 기능자력에 대한 유효기간은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관리 절차서의 20항에 의하여 판단한다.</u></p>	<p>2010년 이전 자격취득자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기준유지 불필요</p> <p>기능자격 정년연장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기존 5년 → 3~5년)</p>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21. 점검	<p>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무정전작업의 안전 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p> <p>나. 점검 시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무정전작업의 안전 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u>점검시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u></p> <p>나. <u>불법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은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장 주관을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의 13. 라항’에 의하여 시행한다.</u></p>	<p>기존 가 및 나항 통합명시</p> <p>추가공사도 불법하도급 점검 의무화</p>
22. 무정전 장비 및 안전장구 관리	<p>아.</p> <p>1)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p> <p>가) 수동식(Y-35) : 11±0.5Ton</p> <p>나) 활선바켓트럭 유압사용 시 : 13±0.8 Ton</p> <p>다) 전동식(Y-46) : 14±1 Ton</p> <p>라) 신설</p>	<p>아.</p> <p>1)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p> <p>가) 수동식(Y-35) : 11±0.5Ton</p> <p>나) 활선바켓트럭 유압사용 시 : 13±0.8 Ton</p> <p>다) 전동식(Y-46) : 14±1 Ton</p> <p>라) <u>Aℓ 케이블의 경우 전동식 30Ton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Aℓ 전선 본격사용에 따른 압축기준 명시</p>
26. 기타	<p>이 절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센터 및 운영실관리지침, 안전작업수칙 등에 따른다.</p>	<p>이 절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센터 및 운영실관리지침, 안전작업수칙, <u>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 도급회사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업무 절차서</u> 등에 따른다.</p>	<p>관련절차서 추가명기</p>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p>[별표 5]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증기준</p>	<p>2. 인증업무 주관 : KEPCO 품질검사소</p> <p>3. 인증자격 : 기본 시험장비 및 시험 기술인력 보유업체</p> <p>가. 시험장비(1개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100kV급 내전압시험기</li> <li>○ DC 내전압시험기</li> <li>○ TR 검상시험기</li> <li>○ 특고압 전압측정기</li> <li>○ 전류측정기(<math>\mu A</math> 표시기능) : 1대이상</li> <li>○ 절연저항측정기(2000M<math>\Omega</math> 1000V Megger) : 1대이상</li> <li>○ (신설)</li> <li>○ 부적합 활선장구 폐기처리시 필요한 천공장치(5cm 구멍) : 1대이상</li> <li>○ 기타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장을 보유할 것</li> <li>○ 현행 실사장비 시험에 필요한 보조전극 등 필요한 약세사리 보유</li> </ul>	<p>2. 인증업무 주관 : 한국전력공사 자재검사처</p> <p>3. <u>인증분야별 시험검사 품목</u></p> <table border="1" data-bbox="1099 384 1778 687"> <thead> <tr> <th>인증분야</th> <th>활선작업차</th> <th>무정전장비(공구)</th> <th>안전장구</th> </tr> </thead> <tbody> <tr> <td>시험검사 품 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연봉</li> <li>• 바켓 외피 및 내피</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케이블 (접속재 포함)</li> <li>• 공사용개폐기</li> <li>• 이동용변압기장치 및 검상부</li> <li>• 전선이선기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 접퍼 케이블</li> <li>• 활선스틱류</li> <li>• 절연덮개류</li> <li>• 안전장구류</li> </ul> </td> </tr> </tbody> </table> <p>4. <u>시험검사 대행회사 : 일정규모의 시험장비 및 시험 기술인력 보유업체</u></p> <p>가. 시험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100kV급 내전압시험기</li> <li>○ DC 내전압시험기</li> <li>○ TR 검상시험기용 <u>보조장치</u></li> <li>○ 특고압 전압측정기</li> <li>○ 전류측정기(<math>\mu A</math> 표시기능) : 1대이상</li> <li>○ 절연저항측정기(2000M<math>\Omega</math> 1000V Megger) : 1대이상</li> <li>○ <u>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 1개이상</u></li> <li>○ 부적합 활선장구 폐기처리시 필요한 천공장치(5cm 구멍) : 1대이상</li> <li>○ 기타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장을 보유할 것</li> <li>○ 현행 실사장비 시험에 필요한 보조전극 등 필요한 약세사리 보유 <u>단, 시험용 지그(JIG)는 표준 규격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u></li> </ul>	인증분야	활선작업차	무정전장비(공구)	안전장구	시험검사 품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연봉</li> <li>• 바켓 외피 및 내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케이블 (접속재 포함)</li> <li>• 공사용개폐기</li> <li>• 이동용변압기장치 및 검상부</li> <li>• 전선이선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 접퍼 케이블</li> <li>• 활선스틱류</li> <li>• 절연덮개류</li> <li>• 안전장구류</li> </ul>	<p><u>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업무절차서 개정사항 반영</u></p>
인증분야	활선작업차	무정전장비(공구)	안전장구								
시험검사 품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연봉</li> <li>• 바켓 외피 및 내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케이블 (접속재 포함)</li> <li>• 공사용개폐기</li> <li>• 이동용변압기장치 및 검상부</li> <li>• 전선이선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패스 접퍼 케이블</li> <li>• 활선스틱류</li> <li>• 절연덮개류</li> <li>• 안전장구류</li> </ul>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p>[별표 5]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증기준</p>	<p>나. 검사 기술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보유기준 : 검사책임자 및 검사기술자 각 1인(1개조 기준)</li> <li>○ 검사기술인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검사기술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시험검사업무 수행능력 보유하고,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포함) 또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포함)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li> </ul> </li> <li>- 검사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검사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li> </ul> </li> </ul> </li> <li>○ 2010.1월 이전에 취득한 검사책임자 및 검사기술자는 종전의 자격을 인정하며, 검사기술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책임자가 될 수 있다.</li> </ul>	<p>나. 검사 기술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보유기준 : 검사책임자 및 검사기술자 2인/1개조 구성</li> <li>○ 검사기술인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책임자 : <u>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포함) 또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포함)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검사책임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경력을 보유한 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력계통 준공시험(보호계전기 시험포함) 2년이상</li> <li>② 전력기자재 관련 시험검사 경력 1년이상</li> <li>③ 무정전 장비 및 안전장구 관련 시험검사경력 1년 이상</li> <li>④ 안전담당분야 및 공사감시경력 2년이상</li> <li>⑤ 단, 인증회사의 검사책임자 퇴사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기능사 자격 보유자중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관련 시험검사 경력 3년이상인 자로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li> </ol> </li> <li>- 검사기술자 : <u>전기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중급이상의 전기기술자(전력기술인협회 발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검사업무 수행능력 보유자</u></li> </ul> </li> <li>○ 2010.1월 이전에 취득한 검사책임자 및 검사기술자는 <u>종전의 자격을 인정한다.</u></li> </ul>	<p><u>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업무절차서 개정사항 반영</u></p>